

유아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

기 관 명 (부 서 명)	교육부 (교육통계과)
연 월 일	2020. . .

법제처 심사 전

1. 개정이유

지난 3월 24일, 「유아교육법」이 개정되었고, 오는 9월 25일 개정 법률이 시행될 예정임

법률에 새로이 규정된 교육 관련 지표 및 예측통계 작성의 대상, 절차 및 결과 공개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위임되어 있는 바, 이와 관련한 세부사항을 정하고자 함

2. 주요내용

가. 교육 관련 지표 및 예측통계 작성의 대상, 절차 및 결과 공개 등에 필요한 사항 규정(안 제7조의4)

법 제6조의2 개정에 따라 교육 관련 지표 및 예측통계 작성·공개가 의무화되었음

이에, 교육 관련 지표 및 예측통계의 작성 대상을 구체적으로 정하고, 작성을 위한 계획 수립, 결과 공개 방법을 명시함

또한, 작성된 교육 관련 지표 및 예측통계를 정책 수립 및 성과 측정 등에 활용하도록 하고, 교육 관련 지표 및 예측통계의 관리 및 대국민 공개를 위한 정보시스템을 운영할 수 있도록 함

아울러, 대통령령에 규정한 사항 이외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부장관이 정하도록 함

나. 국가교육통계센터 위탁 업무 추가(안 제7조의5)

한국교육개발원 국가교육통계센터 위탁 업무에 교육 관련 지표 및
예측통계 관련 정보시스템 구축·운영 업무를 추가함

3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생 략

나. 예산조치 : 별도조치 필요 없음

다. 합 의 : 해당없음

라. 기 타 : 1) 신·구조문대비표, 별첨

2) 입법예고 예정

3) 행정규제 : 규제개혁위원회와 협의 결과, 이견 없음

- 규제 신설·폐지 등, 없음

유아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

유아교육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7조의4를 제7조의5로 하고, 같은 조(종전의 제7조의4) 제2항제2호 중 “법 제6조의2제7항”을 “법 제6조의2제2항”으로 하며, 같은 항 제3호 중 “교육통계조사시스템”을 “교육통계조사시스템 및 제7조의4제5항에 따른 정보시스템”으로 하고, 제7조의4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7조의4(교육지표 및 예측통계의 작성 등) ① 법 제6조의2제2항에 따른 교육 관련 지표 및 학생 수 추계 등 예측통계(이하 이 조에서 “지표 및 예측통계”라 한다)의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.

1. 유아 수 추계 및 예측
2. 유아에 관한 지표
3. 교원에 관한 지표
4. 유치원의 교육여건에 관한 지표
5. 그 밖에 교육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표

② 교육부장관은 지표 및 예측통계 작성을 위한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. 이 경우 계획에는 지표 및 예측통계의 개발·산출·관리·활용·공개 등과 관련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.

③ 교육부장관은 지표 및 예측통계를 작성한 경우에는 그 결과를 교육

부 홈페이지에 게재하는 등 널리 보급할 수 있는 방법으로 공개하여야 한다.

④ 교육부장관 및 교육감은 지표 및 예측통계를 교육정책을 수립하거나 정책성과를 측정함에 있어 그 기초자료로 활용하여야 한다.

⑤ 교육부장관은 최신의 지표 및 예측통계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모든 국민이 편리하게 이용하기 위한 정보시스템을 구축·운영할 수 있다.

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지표 및 예측통계의 작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교육부장관이 정한다.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영은 2020년 9월 25일부터 시행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u><신 설></u>	<u>제7조의4(교육지표 및 예측통계의 작성 등) ① 법 제6조의2제2항에 따른 교육 관련 지표 및 학생 수 추계 등 예측통계(이하 이 조에서 “지표 및 예측통계”라 한다)의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.</u> <u>1. 유아 수 추계 및 예측</u> <u>2. 유아에 관한 지표</u> <u>3. 교원에 관한 지표</u> <u>4. 유치원의 교육여건에 관한 지표</u> <u>5. 그 밖에 교육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표</u> <u>② 교육부장관은 지표 및 예측통계 작성을 위한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. 이 경우 계획에는 지표 및 예측통계의 개발·산출·관리·활용·공개 등과 관련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.</u> <u>③ 교육부장관은 지표 및 예측통계를 작성한 경우에는 그 결과를 교육부 홈페이지에 게재하는 등 널리 보급할 수 있는 방</u>

	<u>법으로 공개하여야 한다.</u> ④ <u>교육부장관 및 교육감은 지표 및 예측통계를 교육정책을 수립하거나 정책성과를 측정함에 있어 그 기초자료로 활용하여야 한다.</u> ⑤ <u>교육부장관은 최신의 지표 및 예측통계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모든 국민이 편리하게 이용하기 위한 정보시스템을 구축·운영할 수 있다.</u> ⑥ <u>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지표 및 예측통계의 작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교육부장관이 정한다.</u>
<u>제7조의4(국가교육통계센터의 지정 및 업무 위탁) ① (생략)</u> ② <u>교육부장관은 법 제6조의2제8항에 따라 한국교육개발원에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위탁한다.</u> 1. (생략) 2. <u>법 제6조의2제7항에 따른 교육 관련 지표 및 예측통계 등 산출 업무</u> 3. <u>제7조의3제7항에 따른 교육</u>	<u>제7조의5(국가교육통계센터의 지정 및 업무 위탁) ① (현행과 같음)</u> ② ----- ----- -----. 1. (현행과 같음) 2. <u>법 제6조의2제2항</u>----- ----- ----- 3. ----- <u>교육</u>

<u>통계조사시스템</u>의 구축·운영 업무	<u>통계조사시스템</u> 및 제7조의4 <u>제5항에 따른 정보시스템</u>--- --
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	---

< 의안 소관 부서명 >

교육통계과	
연 락 처	(044) 203 - 6324